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건물명도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9나53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가단2837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9나5376 판결

판결선고 2010. 5.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한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외에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들의 임대차, 건물수리비 등의 항변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였음을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